



제 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검 토 보 고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96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4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
3. 제정안의 구성체계	13
4. 관계기관 의견	18
IV. 주요 항목별 검토	2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3. 20.

3. 회 부 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1. 김선교의원안

현재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요소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아 대다수의 시장은 지역 내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식자재유통산업은 경쟁력, 식품안전 등 전반적인 산업발전도가 낮고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해 식자재 가격 및 관련 외식업체의 원가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상황이 이러함에도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식자재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식자재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산지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식자재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식자재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수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식자재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식자재유통업체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식자재유통업체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휴업·폐업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식자

재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수장관 등은 중소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한 물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식자재 위생에 관한 교육, 창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차. 식자재유통 우수관리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식자재유통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식자재유통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식자재유통 공동수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IV. 검토의견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제정안에 따르면, 식자재유통산업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산지 생산자 등의 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공산품의 식자재를 급식, 외식업소 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보관·포장·식품안전·배송 과정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의미함.

식자재유통산업은 식품 제조업, 외식업, 급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 식재료와 관련 소모품을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로서, 품질 유지, 정시성 확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식품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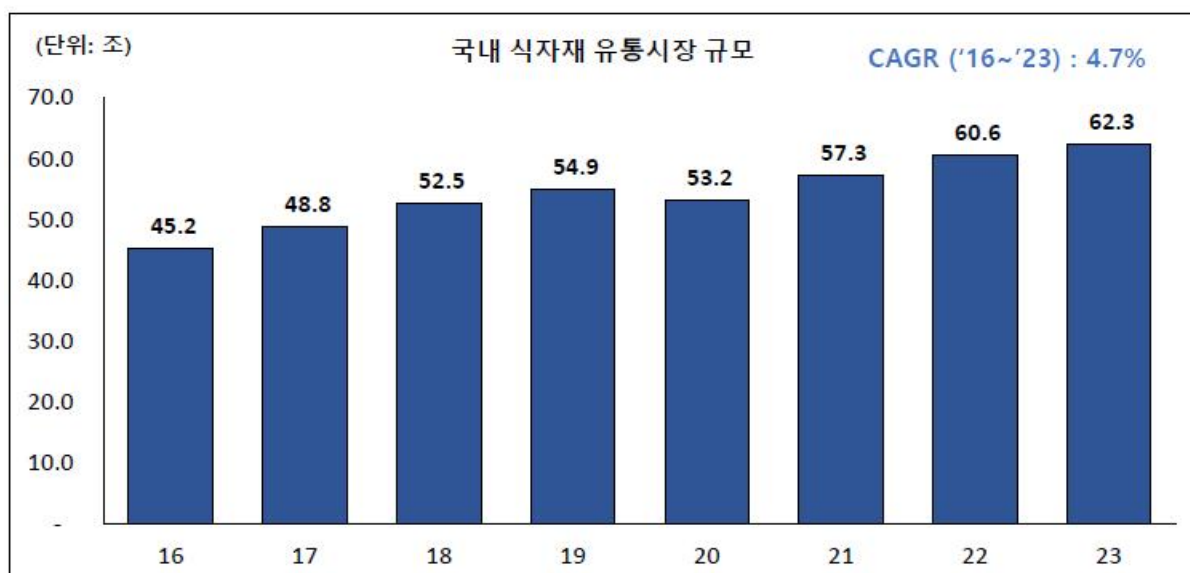
【식재료산업 및 시장 구조와 한식 외식업체의 식재료 공급 경로】



※ 자료: 식재료산업과 연계한 한식산업 발전 방안(KREI 2021)

식자재유통산업의 정의와 범주가 현재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해당 산업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한국식자재유통협회¹⁾의 추산에 따르면 국내 식자재유통산업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62조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2015년 추산 37조원에 대비할 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분야임을 알 수 있음.

【(사)한국식자재유통협회 추정 국내 식자재 유통시장 규모('23): 약 62조원】



* 본 데이터의 추정은 통계청 서비스업조사에 기반하여 매출액 대비 식자재 평균 사업 비중인 38%를 적용한 수치임; 다만, '22년의 경우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10% 차감 조정, '23년·'24년은 과거 5년 물가지수와 GDP 성장률을 고려하여 3.0%를 적용하여 추정

** Source: 통계청 서비스업조사(2022), CY & Partners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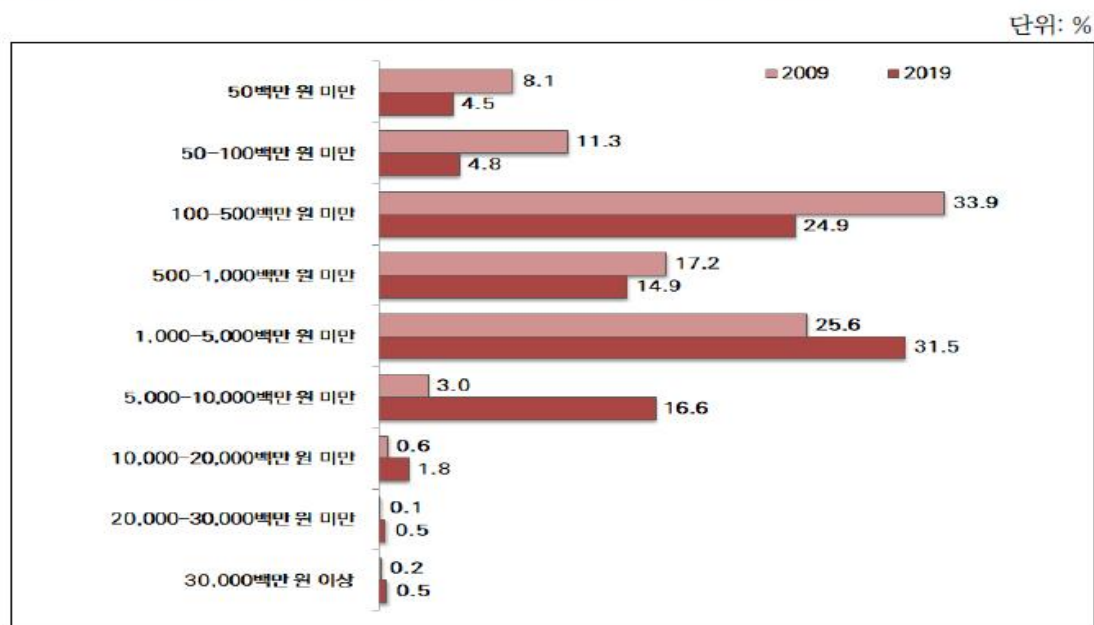
1) (사)한국식자재유통협회 개요

- 연혁: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단법인 설립 허가('17.0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단법인 설립 허가('22.03.)
- 설립 목적: 식자재 유통 관련 연구, 조사, 정보 공유, 회원 간 교류 등으로 식자재 유통산업의 선진화 및 식품위생 안전성 제고를 증진하며, 식자재 기업 역량을 활용한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 주요사업: 식자재 산업 및 시장 통계조사, 우수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개발 사업, 산지 직거래 사업, 식자재유통 식품 안전관리 사업, 중소식자재유통기업 상생·지원 프로그램, 해외시장 수출지원, 해외 선진 산업·기업 벤치마킹 등(출처: (사)한국식자재유통협회 누리집, ikfda.or.kr)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 대부분이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산업 경쟁력과 식품 안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음.

【식재료 유통업체 연간 매출액별 비중(식료품도매업 기준)】

〈그림 3-4〉 식재료 유통업체 연간 매출액별 비중(식료품도매업 기준)



주: 서비스업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음료도매업 제외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http://kosis.kr>, 검색일: 2021. 9. 10.)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한편, 최근 3년간 외식업체 사업실적을 보면 식재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외식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식자재유통업체의 복잡한 유통단계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외식업체 사업실적】

업종 분류	항목	2021			2022			2023		
		매출액	식재료비	영업이익	매출액	식재료비	영업이익	매출액	식재료비	영업이익
전체	금액	20,089	7,355	2,247	23,000	8,630	2,657	25,166	10,156	2,247
	비율	100.0	36.6	11.2	100.0	37.5	11.6	100.0	40.4	8.9
일반 음식점업	금액	20,409	7,703	2,004	24,836	9,780	2,534	28,523	12,039	2,597
	비율	100.0	37.7	9.8	100.0	39.4	10.2	100.0	42.2	9.1
기관구내 식당업	금액	36,945	14,740	4,513	46,172	18,150	6,126	46,751	19,052	5,288
	비율	100.0	39.9	12.2	100.0	39.3	13.3	100.0	40.8	11.3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금액	42,067	14,524	1,868	42,237	13,063	4,477	38,639	18,199	4,745
	비율	100.0	34.5	4.4	100.0	30.9	10.6	100.0	47.1	12.3
기타 음식점업	금액	22,224	8,040	2,617	23,027	8,680	2,814	25,059	10,002	1,937
	비율	100.0	36.2	11.8	100.0	37.7	12.2	100.0	39.9	7.7
주점업	금액	19,328	6,987	2,498	21,651	7,089	2,941	19,246	7,110	1,587
	비율	100.0	36.1	12.9	100.0	32.7	13.6	100.0	36.9	8.2
비알코올 음료점업	금액	14,560	4,556	2,110	15,489	5,021	2,287	16,826	5,668	1,700
	비율	100.0	31.3	14.5	100.0	32.4	14.8	100.0	33.7	10.1

※ 자료: 2024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외식업체 등이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로는 다음 표와 같이 개인
도매상, 프랜차이즈공급, 식자재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식재료유통법인,
대형마트, 소매상, 로컬푸드 직매장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식업체 업종별 식재료 구매 행태】

월평균 구매량 및 금액	월평균 구매량(kg)							월평균 구매 금액(만원)					
	687.2							385.9					
구매경로 (비율응답, %)	개인 도매상	프랜차이즈 본사공급	식자재 마트	농수산물 도매시장	대기업외 식재료 유통법인	일반 대형마트	온라인 마트	식재료 유통 대기업	소매상	산지 직거래 및 로컬푸드	수입상	직접 생산	기타
	22.5	22.4	22.3	10.3	5.9	3.4	3.4	3.0	3.0	2.2	0.7	0.3	0.6
구매빈도 (단수응답, %)	매일		일주일에 3~4회		일주일에 1~2회		월에 2~3회		월에 1회		기타		
	15.4		42.0		29.4		8.1		4.6		0.5		
구매형태 (복수응답, %)	원물				전처리				가공				
	63.6				31.2				5.2				

※ 자료: 2024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

최근에는 외식용 식재료 시장에서도 온라인플랫폼 사업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배달 온라인플랫폼들이 외식용 식재료 유통을 시작하는 등 식재료 전문 온라인 쇼핑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B2B 식자재 유통 업체 최근 사례]

- 마켓봄(2016년 서비스 시작)
 - 모바일로 발주에서 출고관리까지 관리하는 온라인 B2B 식자재 유통 관리 서비스
- 미트박스(2014년 서비스 시작)
 - 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모바일)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
 - 유통단계를 줄여서 원가를 낮추고, 원가 투명 공개로 업무용 식재료시장 문제 해결
- 푸짐(2019년 서비스 시작)
 - 식자재 유통 단계를 시장 경매, 고객 직배송의 2단계로 축소해 불필요한 비용 절감
 - 모바일 앱을 통한 식자재 발주, 구매 이력 관리 등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주문 식재료를 도매시장에서 직접 구매·선별하여 구매자에게 당일 제공

자료: 월간식당(2021. 6. 29.), "모바일앱으로 편리하고 투명하게-B2B 식자재 유통시장." <통권 436호>.
(<http://month.foodbank.co.kr>, 검색일: 2021. 8. 9.).

이처럼 국내 식자재유통산업은 매년 그 규모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잡한 유통 구조로 인해 가격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특히, 규모가 큰 일부 유통업체들이 유통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소 식자재 유통업체와 외식업체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식자재유통산업을 독립적인 산업군으로 인식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전문 인력 육성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자재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정안은 i) 유통산업에 관한 일반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계획 수립, 실태조사, 업체 등록, 지원 시책, 인증·취소, 공동배송센터 등의 주요 내용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식자재유통업체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두 법률 간의 명확한 관계 설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ii) 공급·유통·진흥의 측면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외식산업진흥법」 등과도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산업 발전이라는 정책 취지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iii) 위생·안전의 측면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서 생산·제조·수입·유통·소비 전반에 걸친 정책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할의 중복 우려가 있고,

또한, iv) 영양·급식의 측면에서는 「국민영양관리법」,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추진 중인 정책과 일부 중복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관련조문 현황】

식자재유통산업 진흥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안전 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식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1.목적, §2.정의, §3.기본방향, §4.다른 법률과의 관계, §5.적용배제) 제2장 식자재유통산업 발전계획 (§6.기본계획, §7.시행계획, §8.지자체 사업시행, §9.실태조사) 제3장 식자재유통업체의 등록 (§10~14.업체 등록·허가·허가등 의제, 결격사유, 취소, 휴·폐업신고) 제4장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15.상생발전협의회, §16.분야별 진흥시책, §17.물류지원 §18.위생교육 §19.창업지원 §20.전문인력양성, §21.컨설팅지원, §22~26.우수관리인증, §27.심의위원회) 제5장 식자재유통물류 기능의 효율화 (§28.물류기능 효율화 시책 §29.공동수배송센터 지정)	제1장 총칙 (§1.목적, §2.정의, §3.기본방향, §4.적용배제) 제2장 유통산업발전 계획 등 (§5.기본계획, §6.시행계획, §7.지자체 사업시행, §7의4.실태조사, §7의5.상생발전협의회) 제3장 대규모점포 등 (§8~14.개설변경등록 허가 등 의제, 결격사유, 취소, 업무, 영업시간 제한, 관리비, 서류작성·보관, 회계감사, 관리규정, 지위승계, 휴·폐업신고, 영업정지, 임시시장 개설 등)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15.분야별 발전시책, §16.체인사업자 경영개선 사항 등, §17의2.공동도매물류센터지원)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21.유통정보화시책, §22.표준전자문서 및 정보보안, §23.전문인력 양성, §24.유통관리사, §25.국제화 촉진)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26.유통기능 효율화시책 §29~35.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인허가등 의제 지원,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촉진지구 지정·지원) 제7장 상거래질서 확립 (§36~43.분쟁조정, 상거래 투명화 등)	제1장 총칙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제4장 표시 제5장 식품등의 공전 제6장 검사 등 (위해평가, 검사명령, 출입·검사수거, 조사, 자가품질검사 의무, 의무면제, 확인검사, 식품위생감시원 등) 제7장 영업 (시설기준, 영업허가, 제한, 승계, 건강진단, 식품위생교육, 위생관리, 실적보고, 영업자 준수사항, 보험가입, 위해식품등 회수, 오염 보고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관련, 이력추적관리) 제8장 조리사 등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71~84.시정명령, 폐기처분, 허가취소), 청문, 과징금 등)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제1장 총칙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제3장 축산물의 위생 관리 제4장 검사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시설기준, 영업허가·신고·승계·취소 등, 건강진단, 위생교육, 영업자 준수사항) 이력추적관리 등) 제6장 감독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기본계획, 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자료조사·분석 요청) 제3장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등 제4장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위해성평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등) 제5장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등 제6장 소비자 등의 참여

식자재유통산업 진흥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안전 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식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안전처)
제6장 보칙 (§30.점검·감독, §31.보고, §32.위임·위탁, §33.수수료)	제8장 보칙 (§44~48의2.청문, 점 검·감독, 통보, 위임·위탁, 공무원의제, 수수료 등)			
제7장 벌칙 (§34.벌칙, (§35.과태료)	제9장 벌칙 (§49~52.벌칙, 양벌규 정, 과태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외식산업 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농식품부· 해수부·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제2장 농수산물의 생 산조정 및 출하조절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 성 등, 정보시스템 등)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 장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 시장 등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 금 제6장 농수산물 유통 기구의 정비 등 (§67.유통시설 개선, §69.종합 유통센터 설치, §72.유통정보 화 촉진, §73.재정지원)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2장 수산물유통발 전계획 등 (§5~9.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자체 사업시행, 실태조 사, 유통발전협의회) 제3장 수산물산지위 판장 제4장 수산물의 이 력추적관리 제5장 수산물의 품 질 및 위생관리 (§35.저온유통체계 구축, §36.아획후 위생관리 지원, 가짜재사설 개발보급 포함) 제6장 수산물 수급 관리 (§38.수산업관측) 제7장 수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 (§46.수산물 규격화, §47. 직거래 활성화, §48.소비 지분산물류센터, §49.산지 거점유통센터, §유통정보 화사업, §전자거래 활성화, §55.전문인력 육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 리 (§6~13의2.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인증기관·인증시설, §14~19.수산물품질인증 인 증기관) 제3장 지리적표시 제4장 유전자변형농 수산물의 표시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 설의 등록·관리 제7장 농수산물 등 의 검사 및 검정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2장 외식산업 진 흥기반의 조성 (§5.외식산업진흥기본계 획, §6~11..창업지원전 문인력 양성, 통계관리 등) 제3장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13.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16. 우수 식재료 등 사용촉진)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제1장 총칙 (§4.기본계획, §5.식품산업 진흥심의회)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7.전문인력 양성, §8.기 술개발 촉진, §9.통계조사)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15.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4장 식품의 품질 관리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4.기본계획, §5.식품산업 진흥심의회) 제2장 수산물·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5.기본계획, §6.전문인력 양성, §7.통계조사, §9.기술 개발 촉진) 제3장 수산물·식품산업의 활성화 촉진 (§24.수산물·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4장 수산물·식품품질인증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 자료: 국회법률정보센터 재구성

3.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총 7장, 25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은 법률의 목적, 정의, 시책의 기본방향, 다른법률과의 관계, 적용 배제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제3장은 식자재유통업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4장은 식자재유통발전협의회의 근거, 물류지원 및 창업지원, 우수관리인증제도에 관하여, 제5장은 식자재물류유통 효율화를 위한 배송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장은 기타 보칙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함.

【 제정안의 구성체계 】

구분	제정안
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식자재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적용 배제)
	제2장 식자재유통산업발전계획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등)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부칙	제9조(식자재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3장 식자재유통업체의 등록
	제10조(식자재유통업체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11조(허가등의 의제 등)

구분	제정안
	제12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3조(등록의 취소)
	제14조(식자재유통업체의 휴업·폐업 신고)
	제4장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제15조(식자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16조(분야별 진흥시책)
	제17조(중소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한 물류지원사업)
	제18조(식자재 위생에 관한 교육)
	제19조(창업의 지원)
	제20조(식자재유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21조(식자재유통산업 컨설팅 지원)
	제22조(식자재유통 우수관리의 인증)
	제23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24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제25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7조(식자재유통산업진흥심의위원회)
	제5장 식자재유통물류기능의 효율화
	제28조(식자재유통물류기능 효율화 시책)
	제29조(식자재유통공동수배송센터의 지정 등)
	제6장 보칙
	제30조(식자재유통업체 등의 관리현황 점검·감독 등)
	제31조(보고)
	제3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33조(수수료)
	제7장 벌칙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
부칙	시행일(공포 후 1년)

일반적으로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은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는 법률임.

제정안처럼 산업진흥 관련 법은 새로이 산업 분야의 시장이 형성되거나, 미래 유망산업으로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산업의 정책적인 육성이나 필요한 경우에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일반적으로 총칙(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추진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산업진흥위원회, 실태조사, 통계의 작성 등), 정책수단(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촉진, 표준화의 추진, 창업 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전문기관 또는 지원센터의 지정,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진흥시설의 지정, 재정 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관한 특례 등), 지원 대상 선정(인증·지정제도), 진흥원 또는 협회 등의 설립, 보칙(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 벌칙, 부칙 등으로 구성됨²⁾.

제정안은 이러한 기본법의 구성체계를 비교적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유형별 입법모델 p. 12, 법제실, 2021

[산업진흥법의 구성체계]

구분	조별 세부내용
제명	「○○○산업 육성법」,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목적	특정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반영하고, 산업진흥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책 목적을 함께 기술
정의	산업의 대상, 사업자 등 산업진흥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용어의 뜻을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업진흥법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해당 산업의 진흥육성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규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산업 진흥 또는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일반적으로 5년마다 수립)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시행계획은 기본계획과 같은 조에서 규정하거나 조를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
산업진흥위원회	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산업진흥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산업의 현황 파악 등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통계의 작성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통계를 작성하도록 규정 -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계법」 준용
전문인력 양성	- 산업 진흥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규정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등 시행 관련 사항을 함께 규정
연구개발 촉진	- 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규정 -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함께 규정
표준화의 추진	- 산업 관련 기술, 서비스, 제품 등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 관련 사업자 등에 사용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창업 지원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정보시스템의 구축	산업 동향 등 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전문기관 또는 지원센터의 지정	- 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산업 지원 전문기관 또는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비용 지원,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

구분	조별 세부내용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산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진흥시설의 지정	- 산업 진흥을 위하여 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정절차, 지정요건, 지정 해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
재정 지원	- 진흥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 진흥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에 관한 특례	- 국유재산의 양여,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법」 별표도 함께 개정 ※ 부칙에서의 '다른 법률의 개정'이 아닌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만 가능
인증 지정제도	- 우수사업자, 우수제품 등에 대하여 인증·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인증·지정의 표시, 인증·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인증·지정의 취소사항을 함께 규정할 필요
진흥원 또는 협회 등의 설립	- 산업의 진흥발전의 지원을 위하여 진흥원 또는 협회 등 필요한 기관을 설립 - 설립 근거, 임직원, 수행사업, 예산 지원, 「민법」의 준용,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을 함께 규정
청문	전문기관 또는 자원센터의 지정취소,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인증 취소 등을 하는 경우 청문 규정 마련
권한의 위임·위탁	필요한 경우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규정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정성 등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형법」 등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으로 의제
벌칙	규제법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진흥 관련 실체적 규정들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경우 제한적으로 규정
양벌규정	위법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법인 등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규정
과태료	인증·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표시를 한 자,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부칙	일반적으로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자료: 유형별 입법모델 p. 12, 법제실, 2021

4. 관계기관 의견

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법은 기존 법률과 대상, 내용에서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실익이 없고, 법률 적용 대상·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해당 대상·범위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법률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률 제정 전에 ‘식자재’의 대상 범위, 영업등록, 식품안전관리, 유통산업 지원 등에 대해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각 분야별 소관 부처와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제정안 상의 계획수립·시행, 실태조사, 분야별 진흥시책 및 지원사업 등은 「수산물유통법」과 여러 측면에서 중복되어 제정 실익이 적고 충돌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는 동 법안의 대상인 식자재 유통사업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 또한 기존 법률들 내에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정안의 적용 대상·범위가 모호한 면이 있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존 법률의 대상·범위와 중복되어 이중 규제 또는 기존 법 체계와 충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이 「유통산업발전법」과 여러 측면에서 중복 규제 가능성이 있어 중복 규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급식 및 외식업소 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어려운 바, 식자재를 취급하는 모든 유통업체가 규제 대상에 포섭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바. 한국식자재유통협회

한국식자재유통협회는 식자재유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식자재유통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 법에 따른

식자재유통업체의 등록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하면서, 식품 제조 및接客업체는 식자재유통업체로 등록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사.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제정법안에 따를 때 식자재유통산업의 주요 수요자인 외식업계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정책의 현실 반영이 부족할 수 있고,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임.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외식·급식업체를 포함할 필요가 있고, 식자재유통산업진흥심의위원회에도 외식·급식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 한국커피협회

한국커피협회는 식자재유통산업 지원에 관한 법제화에 찬성하는 입장임.

IV. 주요 항목별 검토

(1) 목적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법 제정의 목적이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산지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하는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안 제1조).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산지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이 기존 유관법률들과 대상·내용에 중복되는 규정이 많고 법률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지원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나. 검토의견

목적 규정은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개별조문을 해석·집행할 때 그 구체적인 의미를 명확히 하는 지침으로 기능하게 되며, 다수의 법률에서 목적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의 목적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규정과 유사하고,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 범위 내에 포섭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정의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식자재유통산업”, “식자재유통업체”, “중소식자재유통업체” 및 “공동수배송센터”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2조).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자재유통산업”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산지 생산자 등의 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식자재를 급식 및 외식업소 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보관·포장·식품안전·배송 과정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식자재유통업체”란 급식 및 외식업소가 필요로 하는 일체의 식자재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사업운영모델의 유형, 취급상품 및 시장의 범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되는 업체를 말한다. 3. “중소식자재유통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식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4. “공동수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송·배송 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법률과의 중복 또는 충돌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어려우며, 급식 및 외식업소 만을 대상으로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를 구분하기 어렵고, 식자재의 범위 또한 모호하다는 의견임.

2)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식품정책은 식품 관련 각 개별 법률에 따라 규정·추진되고 있어, 중복 규정이며 법률간 충돌 우려가 있고, 특히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안전’은 식자재유통산업의 범주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산업통상자원부

제정안에 따른 “식자재유통업체”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 기업형 슈퍼마켓), 슈퍼마켓 등 식자재를 취급하는 모든 유통업체가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4) 한국식자재유통협회

“식자재” 범위에서 식품이 아닌 공산품을 제외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매장형 점포를 “식자재유통업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식자재유통산업’이나 ‘식자재유통업체’ 등은 일반적으로 확립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정책 대상 범주의 명확화를 위한 개념 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다만, 제정안 (제2조제1호)는 식자재유통산업을 ‘급식 및 외식업소가 필요’로 하는 식자재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유통산업으로, 그러한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식자재유통사업체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급식 및 외식업소만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유통업체를 선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일반적으로 식품유통업체는 외식업체 외에도 가정,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등 다양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므로, 급식 및 외식업체로만 유통되는 영역을 별도의 산업이나 사업자로 구분하는 것은 기술적·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특정 소비자(급식 또는 외식사업자)에게만 공급하도록 산업이나 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일종의 규제로 인식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식자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따르면, 식자재는 음식을 만드는 데에 쓰이

는 재료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예를 들면 식재료에 포장재, 조리용 소모품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을 이해되는 반면, 식재료는 음식을 만드는 데 직접 쓰이는 기초 재료를 의미함.

식품 관련 유관법률인 「식품산업진흥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식산업진흥법」, 「학교급식법」 등에서는 음식을 만드는데 쓰이는 재료라는 의미로 ‘식재료’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식재료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식자재유통산업을 ‘농산물·축산물·수산물(산지 생산자 등의 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조문³⁾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따른 ‘공산품의 식자재’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제정안이 가공식품 등을 포함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공산품의 식자재’ 부분을 삭제하고 “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라고 표현한 편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보임.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또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서는 법 적용의 혼란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을 고려하여 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도 ‘식품안전’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2조제2호)는 ‘식자재유통업체’를 정의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
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제정안 제2호의 ‘사업모델의 유형, 취급상품 및 시장의 범위 등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되는 업체’라는 문구를 일반적인 입법례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제2조제3호)에서는 식자재유통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중소식자재유통업체’로 정의
하고 있음.

제정안 전반에서 ‘중소식자재유통업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
는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의 개념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는
데, 일반적으로 확립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기업형 식자재유
통업체’에 대한 정의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제2조제4호)는 ‘공동수배송센터’를 정의하고 있는데, 유사입법
례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4)에도 유사한 개념이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준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
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3) 식자재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국가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 위하여 마련하여야 하는 시책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식자재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국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식자재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식자재유통산업에서의 식품안전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증진 3. 식자재유통산업의 규모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식자재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 식자재유통산업의 유통단계별 균형발전의 도모 6.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7. 식자재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6.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8. 식자재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7. 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9. 그 밖에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 제3조의 내용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대부분 같아 별도의 제정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기본방향은 법률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에 관한 선언적 규정으로 주요 정책방향과 내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기본방향 규정을 두면서 9개의 호를 구성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기본방향은 「유통산업발전법」, 「식품안전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의 각 조문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조 제목으로는 기본원칙, 기본방향 보다 ‘기본이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⁵⁾할 것으로 보임.

5) 「법제기준과 실제」 242 P

제정안	중복규정
1. 식자재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1호와 중복
2. 식자재유통산업에서의 식품안전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증진	- “소비자 편익 증진”: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2호와 중복 - “식품안전을 통한 소비자 보호”: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제1항과 유사
3. 식자재유통산업의 규모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식자재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4호와 중복
5. 식자재유통산업의 유통단계별 균형발전의 도모	-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규정,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규정
6.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5호와 중복
7. 식자재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6호와 중복
8. 식자재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7호와 중복
9. 그 밖에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8호와 중복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25.4.11 제출)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식자재유통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4조).

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자재유통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등에서 이미 식자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과의 관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련된 여러 개의 개별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문임.

제정안과 같은 규정 방식은 제정안에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임.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특별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다만, 제정안에 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다른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다수 있어, 일률적으로 이 법을 우선적용 할 경우, 행정 현장에서 법 적용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각 법률과의 적용순위 등 관계설정에 관하여 각 부처·부서간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계법령	규정내용
「유통산업발전법」	매장,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유통물류센터, 공동집배송센터 등 식품 및 공산품의 유통산업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가공 또는 조리하지 않은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
「축산법」	가축시장 등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한편, 특별법적 지위의 법률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할 때, 해당법률을 우선 적용하되 일부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해당 법률을 적용하되 일부사항은 다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사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식품안전기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식품등의 안전에 관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식품안전법령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산업 진흥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산업진흥 및 농업의 연계강화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식산업 진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외식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식품산업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5) 적용배제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가축시장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u>시장 및 사업장</u> 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u>시장·사업장 및 매장</u> 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 또는 조리하지 않은 농수산물의 유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식품 및 공산품의 유통산업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안전에 대한 「식품안전기본법」 등 다양한 식품안전법령과의 관계설정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제정안 제5조는 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이미 별도의 법률에 따라 체계적이고 특수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통 시장들을 제외함으로써, 중복 규제와 제도적 충돌을 방지하고, 식자재유통산업의 고유 목적과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매장,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유통물류센터, 공동집배송센터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축산법」에서는 가축시장에 대하여 이미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 제5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5년마다 식자재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절차를 규정하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한편,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식자재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자재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식자재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3. 식자재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4. 식자재유통산업의 지역별·규모별·종류별·유통단계별 발전 방안 5. 지역별 유통 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6. 식자재유통산업 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변화에 대한 전망 7.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중소식자재유통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9. 그 밖에 식자재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4. 유통산업의 지역별·종류별 발전 방안 5. 산업별·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需給) 변화에 대한 전망 7.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9.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식자재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미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1. 지역식자재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지역식자재유통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3. 지역식자재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지역식자재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5. 지역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그 밖에 지역식자재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지역유통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3. 지역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 방안 5.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공급 방안 7.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지역별 시행계획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과 중복된다는 입장임.

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경우, 제정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명시한 사항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제7조까지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과 중복되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 동 법안의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 또한 기존 법률들 내에 이미 마련되어 있어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된 계획·시책·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함으로써 법률의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됨⁶⁾.

제정안 역시 식자재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근거, 수립절차 및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식자재유통산업은 대체로 지역 내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경쟁력, 식품안전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산업 발전도가 낮고,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한 식자재 가격상승으로 관련 외식업체의 원가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도모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6) 법제기준과 실제 p. 266, 법제실, 2024, 5.

다만, 동 조항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규정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 제정안에서 식자재유통산업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계획들과 중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서로 연관된 정책 영역에서 수립되는 다양한 계획들 사이에 모순이나 상충하는 내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관련 계획들이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거나,

특정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내용이나 범위가 중복될 여지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입법례가 존재하는 바, 이러한 방식의 도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련 입법례】

구분	관련 입법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 연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 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 발·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구분	관련 입법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포함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제정안은 동 조의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은 제6조제2항제6호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중소식자재유통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식자재유통업체’는 제2조에서 정의된 개념인데 반하여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는 그 범주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정의규정에 신설하거나, 해당 조문에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제정안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별 시행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제1항 후단의 예와 같이 시·도지사가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7) 식자재유통산업의 실태조사(안 제9조)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실태조사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식자재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식자재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식자재유통업체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식자재유통산업의 실태조사 범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와 중복된다는 의견임.

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식자재유통업체에 관한 실태조사 가능하므로 제정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계획수립은 그동안의 정책성과 및 집행현황 등을 근거로 장기간에 걸친 정책방향을 제시하게 되므로 실태조사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정부차원의 식자재유통산업에 관한 실태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식자재유통산업의 현황 파악이 곤란하여

산업진흥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정안은 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제7조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⁷⁾와 그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고,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⁸⁾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조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①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 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별·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의 국내외 유통 현황 및 유통종사자 현황
2. 법 제27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의 등록 및 표시 현황
3. 수산물 품질과 위생관리 현황
4. 수산물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감모량(減耗量) 및 폐기량 등 수산물 수급 현황
5.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

7)

※ 참고 유통산업 실태조사 사업 수행기관(보조사업자) 모집(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64호, 2023년 2월 15일)
유통산업(유통·물류프랜차이즈 등)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 (사업내용) 유통산업 실태조사(수시), 프랜차이즈 실태조사(격년, 수시), 기업물류비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등
- (사업기간) '23년~'24년(2년) / ○ (사업비) 458백만원 ('23년 사업비, 민간경상보조 100%)

8) 수산물 수급 환경 변화,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중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라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산 식재료와 수산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바, 이 범위에서도 식자재유통에 관한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고사항】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통계조사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1.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업에 관한 사항
2. 식재료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소비·유통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의 분석·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 실태조사」 실시현황

1.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매년): 국내 식품제조업체에서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원료 사용 현황, 이용 환경, 소비 흐름 등 조사
2. 외식업체 경영실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매년) 국내 외식업체 사업자 및 사업장 영업정보, 식재료 구입 관련 정보 조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통계조사의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의 생산·가공·제조·조리업에 관한 사항
2. 수산 식재료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수산식품을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4. 수산식품의 소비·유통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수산식품산업 동향의 분석·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편, 제정안은 「유통산업진흥법」⁹⁾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이가 있음.

「유통산업진흥법」과 같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위탁기관을 한정할 경우 실태조사의 신뢰성 확보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9)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4에 따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8) 식자재유통업체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안 제10조)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식자재유통업체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그 등록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단일한 창구로 일괄 등록·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식자재유통업체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식자재유통업체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일한 창구를 통해 일괄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하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록서류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⑦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법에 따른 식자재유통업을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각각의 영업의 종류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각기 다른 허가, 등록, 신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일괄 처리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와 유사하여 중복 규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

현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개설 및 변경 등록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 규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일반

소규모 슈퍼마켓까지 개설 등록 대상에 포함되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함.

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등에서 영업신고 및 등록에 관하여 이미 규정하고 있는 바 제정안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4) 한국식자재유통협회

한국식자재유통협회는 식재료유통업 현황, 규모, 수요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식자재유통업체 개설등록을 의무사항으로 하기보다 재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다. 검토의견

제정안은 식자재유통업체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정안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법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자재유통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식자재유통업체로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제정법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식자재유통사업을 육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제정안에 따른 식자재유통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식품위생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등을 항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개의 식자재유통업체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또다른 행정규제로 인식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이러한 행정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10조제2항에서 “식자재유통업체 개설등록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일한 창구를 통해 일괄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유사입법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법문만으로는 그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며, 해당 규정만으로 「식품위생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거나, 그 ‘허가·등록·신고’ 의무가 수행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허가등의 의제 등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식자재유통업체를 등록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 허가·신고·등록 및 제88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식자재유통업체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 허가·신고·등록 2.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신고 ② 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식자재유통업체의 개설등록 신청시에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식자재유통업체의 등록신청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지정·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신고 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신고 6. 「평생교육법」 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1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1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승계의 신고 1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14.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6.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의 등록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개설의 등록 ② 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시에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위생법」에서 전체 식품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총 22개 업종을 규정 관리하고 있으며, 식자재유통업체 개설등록만으로 허가 등을 의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등에서 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자재 유통업 개설등록만으로 허가 등 의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3) 한국식자재유통협회

식재료유통업 신규 개설등록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이 법률에 따른 개설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현행 「식품위생법」 제36조·제37조 및 「식품위생법」 제21조·제25조·제26조·제26조의2·제26조의3 등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판매에 대한 총 22개 영업의 종류와 허가·등록·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营业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营业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나. 식품판매업
 -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쬔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
7. 용기·포장류제조업
 -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나. 용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24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6. 제21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
 7. 제21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수산물(水産動物)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検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

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신고로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중 「주세법」 제2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3.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수산동물류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할 때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4.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만 해당한다)

⑥ ~ ⑬ (생략)

현재 제정안에 따른 식자재유통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서류 준비와 다수의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허가·등록·신고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음.

제정안은 식자재유통업체로 개설 등록을 하는 경우, 식자재유통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다양한 허가·등록·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식자재유통업체를 개설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이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등의 의제 규정 신설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 (제11조제1항제1호) 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 허가·신고·등록’을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업종¹⁰⁾과 등록대상업종¹¹⁾은 ‘식자재유통업체’와 무관하고,

신고대상업종¹²⁾ 중에도 용기·포장류제조업,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등 일부 업종도 식자재유통업과 관련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 허가·신고·등록”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 (제11조제1항제2호) 에서는 「식품위생법」 제88조¹³⁾에 따른 신고를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단급식소의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식자재유통업과 무관하므로, 이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 * 허가 대상 업종: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11) * 등록 대상 업종: 「주세법」 제2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12) * 신고 대상 업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13)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편,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허가등의 의제 규정을 참고하여 식자재유통업체를 운영할 때 일반적으로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일부 사항에 관한 의제 추가 필요성에 대하여도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사항】

1. ~ 11. (생략)
1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승계의 신고
1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14.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6. · 17. (생략)

(10) 등록의 결격사유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식자재유통업체의 등록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식자재유통업체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결격사유 규정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결격사유 신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제정안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이거나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는 해당 사유를 가진 자가 식자재유통업체로 등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일반국민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결격사유는 해당 사유를 가진 자를 특정 직업이나 사업에서 배제하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게 되므로 그 도입의 필요성과 기본권 제한을 비교형량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¹⁴⁾.

14) 「행정기본법」 제16조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필요한 업종의 영업신고를 이행하면 제정안에 따른 식자재유통업체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할 수 있고, 해당 신고에 대하여는 별도의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서 식자재유통업체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추가적인 규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유사입법례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에서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일부 규제를 통하여 유통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지역 소상공인 등과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고, 대규모점포등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업체는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른 식자재유통업체에 결격사유를 추가하게 되는 경우 그 규모 및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계없이 결격사유를 두게 되는 바, 식자재유통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의무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등록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으로서 행정제재처분 후 일정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되도록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한편, 제정안은 새로운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 당시 이미 식자재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등, 기존 사업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등록의 취소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식자재유통업체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등록의 취소)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식자재유통업체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식자재유통업체 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자재유통업체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식자재유통업체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법에 따른 식자재유통업체의 개설 등록에 대하여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관련된 등록 취소에 관하여도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산업통상자원부

다. 검토의견

제정안 제13조는 등록한 식자재유통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장기간 휴업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 영업활동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임.

「식품위생법」은 제75조에서 영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을 둔 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는 대규모점포등이 1년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이상 휴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개설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양자의 입법례 사이에서 식자재유통업의 위상을 고려할 때, 재량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장기간 영업미개시, 장기간 휴업에 대하여만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경우를 등록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 규정】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2) 식자재유통업체의 휴업·폐업 신고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정부가 식자재유통업체가 휴업이나 폐업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식자재유통업체의 휴업·폐업 신고) 식자재유통업체 개설자가 식자재유통업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물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폐업 신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법에 따른 식자재유통업체의 개설 등록에 대하여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관련된 휴업·폐업에 관하여도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 검토의견

제정안은 식자재유통업체 개설자가 식자재유통업체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행정청이 관할 구역 내 식자재유통업체의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등록만 유지하면서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10조에 따른 식자재유통업체의 개설 등록 규정을 반영하는 경우, 휴업·폐업 신고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관련 규정】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3) 식자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지역 중소 식자재유통업체 간의 균형 발전과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식자재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식자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지역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식자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 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 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 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 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 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균형발전을 위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제정법에 따른 식자재유통기업도 이 범위에 포함되므로 법 제정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식자재유통업체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어, 중복 규정이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제정안은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지역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식자재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인한 지역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위축을 방지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를 마련하고, 공적기구를 통한 제되화된 협의창구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따라 관련 업체간의 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 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⑤ (생 략)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 ④ (생 략)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의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이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생 략)

(14) 분야별 진흥시책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지역의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상생을 위한 시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분야별 진흥시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지역의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상생을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중소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한 자금·경영·정보·기술·인력의 지원에 관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 2.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 3.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③ (생략)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자금·경영·정보·기술·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한 사항 3. 선진유통기법의 도입·보급 등을 위한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교육·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항 3. 선진유통기법의 도입·보급 등을 위한 중소유통기업자의 교육·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운영 등 중소유통기업의 공동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산업법」 규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므로 법 제정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제정안은 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식자재유통업체간 상생과 중소식자재유통업 창업, 자금·경영·정보·기술·인력의 지원 및 교육·연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지역의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상생을 위한 시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i) 「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시책 ii) 「식품산업진흥법」과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iii) 「식품산업진흥법」상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규정, iv) 「수산물식품산업법」에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수산물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규정 v) 「축산법」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따른 축산물 유통개선 규정 등에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
2.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
3.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자금·경영·정보·기술·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유통기법의 도입·보급 등을 위한 중소기업자의 교육·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운영 등 중소기업의 공동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급식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자재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자재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산식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수산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재료 계약 공급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재료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재료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5조(교육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교육훈련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법인,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공판장(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및 시장 도매인의 임직원
2. 경매사
3. 중도매인(법인을 포함한다)
4. 산지유통인
5.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6. 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인
7. 농수산물의 저장·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

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① 해양수산물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산물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유통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2. 수산물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3.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선진 유통기법의 개발·보급
4.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과 유통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교육훈련
5. 그 밖에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5) 중소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한 물류지원사업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물류지원을 위하여 물류 대행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식자재유통공동물류센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 중소식자재유통업체간 상생강화를 위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중소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한 물류 지원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물류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물류 대행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식자재유통업체 중 10인 이상의 자가 공동(이하 이 조에서 “중소식자재유통단체”라 한다)으로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중소식자재유통공동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 물류사업 2. 상품의 전시 3.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4. 중소식자재유통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서비스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③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 및 중소식자재유통업체 간 협력 및 상생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의 구매, 물류 등 인프라를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중소식자재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매칭서비스 및 인수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 물류사업 2. 상품의 전시 3.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자단체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2.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 제17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등에 대한 지원과 유사·중복되므로 법 제정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에 따른 식자재유통업체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 적용 대상이므로 중복규정이라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현재 국가차원의 중소식자재유통업체 물류센터, 공동물류사업 및 물류정보화 등에 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물류 효율화를 이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중소식자재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물류 효율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와의 협력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유통기업의 물류센터 건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

이러한 물류센터의 지원대상에 제정안에 따른 중소식자재유통업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유사·중복조항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하여도 관련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관련 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수집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할 목적으로 보관·포장·가공·배송·판매 등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개설,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한편, 제정안 제17조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물류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물류 대행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중소식자재유통업체의 물류지원과 물류 대행업체의 지원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1차적 지원의 대상은 중소식자재유통업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지원대상을 ‘중소식자재유통업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은 제17조제3항에서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의 구매, 물류 등 인프라를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중소식자재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매칭서비스 및 인수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구매력이나 물류시스템이 부족한 중소식자재유통업체가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의 구매·물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매칭서비스·인수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불명확하며, 기업형 식자재유통업체는 민간 기업으로서 해당 구매·물류시스템은 업체의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매칭서비스·인수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6) 식자재 위생에 관한 교육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식자재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년 식자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정안
제18조(식자재 위생에 관한 교육) 식자재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식자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식품관련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중복규정이라는 입장임.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등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교육의 별도 신설은 식자재 산업진흥이라는 동 법률의 목적과 무관한 사항이라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제정법에 따른 식자재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식당, 학교, 병원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원재료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전달과정에서 부패, 오염, 이물질 혼입 등의 위험이 생기는 경우 대규모 식중독 등 위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자재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통하여 위생인식과 관리수준을 높이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법에 따른 식자재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은 현행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수행되고 있어 제정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 중복규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음.

한편, 제정안 제11조(허가등의 의제 등)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교육 등도 당연한 의무가 되므로,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임.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통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6. 제21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7. 제21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자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9.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영 제7조의9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17)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지원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식자재유통산업의 창업촉진·경영개선 지원, 전문인력양성 및 컨설팅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창업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식자재유통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식자재유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식자재유통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자재유통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 ~ ③ (생략)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u>창업을 지원</u>하기 위한 사항 2. 중소기업에 대한 <u>자금·경영·정보·기술·인력의 지원</u>에 관한 사항 3. <u>선진유통기법의 도입·보급 등을 위한 중소기업자의 교육·연수의 지원</u>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운영 등 중소기업의 공동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식자재유통산업 컨설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자재유통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 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창업지원(제1호), 자금·경영·정보·기술·인력의 지원(제2호), 교육·연수의 지원(제3호) 규정과 중복된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식자재유통산업은 물류, 냉장시설, 유통망 확보 등 초기 자본과 인프라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임.

제정안 제19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창업촉진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식자재유통산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는 인력개발 및 컨설팅지 등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바, 제정안은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제4항에는 창업지원(제1호), 자금·경영·정보·기술·인력의 지원(제2호), 교육·연수의 지원(제3호) 규정을 두고 있어 해당 조항으로도 식자재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이외에도 i) 인력개발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5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ii)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5조, 「수산식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도 관련 지원근거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5조(교육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교육훈련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법인,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공판장(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및 시장
2. 경매사
3. 중도매인(법인을 포함한다)
4. 산지유통인
5.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6. 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인
7. 농수산물의 저장·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산물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유통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2. 수산물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3.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선진 유통기법의 개발·보급
4.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과 유통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교육훈련
5. 그 밖에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법」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산식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8)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인증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우수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식자재유통업체는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2조(식자재유통 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유통 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식자재유통업체를 경영하는 자는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자재유통 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식자재유통 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 기준에 따라 생산·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용기·송장(送狀)·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대상품목·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목적과 범위가 모호하고 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생산·관리·출하 단계가 모두 포함된 인증제도가 존재하므로 입법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관리인증의 범위가 모호하고,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과정에서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중복적 규정이라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제정안은 식자재유통산업 전반의 위생·품질·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수요처(공공급식, 학교 등)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우수관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유통업체에게 공신력 있는 인증을 부여하여, 산업 전반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식자재 생산단계 뿐 아니라 식자재의 유통단계에서도 오염이나 품질 저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식자재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인증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제6조)와 ‘수산물 품질인증제도’(제14조)가 규정되어 있는데, 전자는 그 인증사항으로 농산물의 생산·관리·포장·수확 후 관리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후자 역시 수산물의 생산·출하·유통단계까지를 포함하고 있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수산물품질기준】

구분	평가기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농산물우수관리기준	1.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3. 농경지 토양 관리, 3. 농경지 토양 관리, 5. 물 관리, 6. 작물 보호 및 농약 사용(6.1.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6.2. 잔류농약 등 위해요소 관리, 6.3. 농약의 보관 및 관리), 7. 수확 작업 및 보관, 8. 수확 후 관리 및 시설, 9.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10. 농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11. 교육, 12. 내부심사제 운영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품목별 품질기준	(원료 원산지, 선별, 협작물, 견제품 성상 등)과 공장심사 기준(1. 원료확보, 2. 생산시설 및 자재, 3. 작업장환경 및 종사자의 위생 관리, 4.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상태, 5. 자체품질관리기준, 6. 품질관리열의도, 7.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8. 대외 신용도)

한편, 「식품위생법」 제48조에서도 단계별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에도 운송·판매업이 포함되어 있음.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계별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식품별로 정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제조·유통·보관·판매에 대한 HACCP인증 현황: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18개소), 기타식품판매업(7개소), 접객업소(21개소), 냉동보관업(6개소)

따라서 상기 두 법률에 따른 인증제도로 농수산물의 생산 관리 포장 및 유통까지의 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제정안에 따른 식자재유통 우수관리인정의 별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벌칙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우수관리기관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수관리인증제도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는 바, 제정안이 반영되는 경우 추가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9)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2년이라는 사실과 인증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에 끝나기 전에 갱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3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우수관리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절차 및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우수관리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생산계획 등 농림

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절차 및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목적과 범위가 모호하고 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생산·관리·출하 단계가 모두 포함된 인증제도가 존재하므로 입법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관리인증의 범위가 모호하고,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과정에서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중복적 규정이라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제정안은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증을 받은 업체가 우수관리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제정안의 우수관리인증제도가 반영되는 경우 동 유효기간 조항은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제22조제5항에 따른 조사, 점검, 자료제출 요청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사, 점검, 자료제출 요청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업종전환·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3.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5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한 경우 지체 없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우수관리인증 취소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4.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의2.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제6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제7조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6.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한 경우 지체 없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목적과 범위가 모호하고 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생산·관리·출하 단계가 모두 포함된 인증제도가 존재하므로 입법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관리인증의 범위가 모호하고,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과정에서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중복적 규정이라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제정안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이후에도 인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인증 취소·정지 또는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됨.

따라서 제정안을 수용할 경우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의 조문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유사입법례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비할 때

취소사유를 비교적 간소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나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등은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1)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관리인증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이 유효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5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도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관리인증 2. 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우수관리인증 지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⑤ 그 밖에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른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갱신, 유효기간 연장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취소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⑦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목적과 범위가 모호하고 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생산·관리·출하 단계가 모두 포함된 인증제도가 존재하므로 입법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관리인증의 범위가 모호하고,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과정에서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중복적 규정이라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제정안은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수관리인증 제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를 위하여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유사입법례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제4항은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여 신속한 신고접수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인증기관의 취소가 인증 보유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취소사실을 해당 인증 보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25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규정을 수용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우수관리인증기관이 공공적 성격의 인증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한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2)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부적절하거나 불성실한 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6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한 경우	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한 경우 3. <u>우수관리인증기관의 해산·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u>

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3. 제25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와 관련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등 임원·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6. 제9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잘못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9. 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목적과 범위가 모호하고 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생산·관리·출하 단계가 모두 포함된 인증제도가 존재하므로 입법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관리인증의 범위가 모호하고,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과정에서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중복적 규정이라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제정안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자격 유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인증기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따라서 제정안의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제도를 수용하는 경우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공정한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유사입법례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¹⁵⁾의 예를 참고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사유 중 우수관리인증기관의 해산·부도, 중요사항의 변경신고 미실시, 준수사항 위반 등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의 신청, 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3.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23) 식자재유통산업진흥심의위원회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식자재유통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식자재유통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정안

제27조(식자재유통산업진흥심의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식자재유통산업진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식자재유통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식자재유통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식자재유통산업 관계 공무원
2. 식자재유통산업 관련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식자재유통산업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식자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법안의 ‘식자재유통산업진흥심의위원회’는 식자재유통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로 현행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활용하거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임.

2) 행정안전부

현재 설치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해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위원회 신설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검토의견

제정안은 식자재유통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i) 식자재유통산업 관계 공무원 ii) 식자재유통산업 관련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iii) 식자재유통산업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iv) 식자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식자재유통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과 정책의 전문성, 투명성,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자문·조사·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는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위원회 정비를 추진중에 있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기준 】

	정비 대상	정비안
폐지	①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②운영실적 저조 위원회 ③공무원들로만 구성 or 민간위원 참여 저조 위원회 ④설치목적 기달성 및 여건 변화로 필요성 감소 위원회 ⑤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폐 지 ※ 필요시, 비상설 회의체 혹은 협의체로 운영
통합	⑥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 위원회	유사 위원회 간 통합

자료 :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법령개정 부처합동 추진계획(안)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신규 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활용하거나, 정책자문위원회의 하위 분과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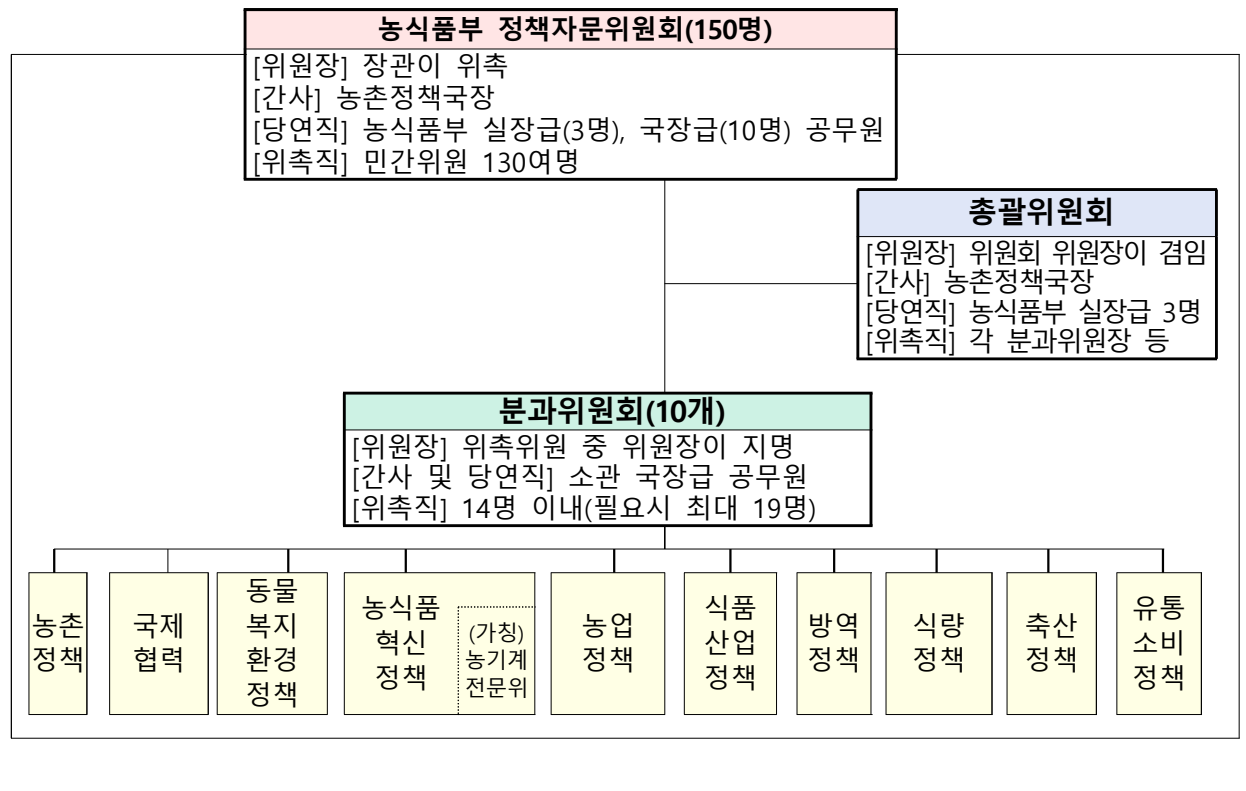
【심 의 회 구 성】

구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인원	20명 이내	20명 이내
구성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명 이내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명 이내 가. 수산업·어촌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수산업·어촌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심의 사항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중앙심의회, 시·도심의회 및 시·군·구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자료: 국회법령정보시스템 재구성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 **(구성)** 위원장(장관 위촉) 포함 150명 이내(임기 2년)
- **(운영)**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총괄위원회로 운영
 - **(본위원회)** 농식품부 실·국장급 공무원(13명) 포함 150명 이내
 - **(분과위원회)** 소관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총괄위원회)** 농식품부 실장급 공무원(3명)과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 특정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 등의 자문,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농촌정책국('25.4.11. 제출)

(24) 식자재유통물류기능 효율화 시책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물류기술·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식자재유통물류기능 효율화 시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식자재유통 물류표준화의 촉진 2. 식자재유통 물류정보화 기반의 확충 3. 식자재유통 물류공동화의 촉진 4. 식자재유통 물류기능의 외부 위탁 촉진 5. 식자재유통 물류기술·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6. 식자재유통 수배송시설 및 공동수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7. 그 밖에 식자재유통 물류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물류표준화의 촉진 2. 물류정보화 기반의 확충 3. 물류공동화의 촉진 4. 물류기능의 외부 위탁 촉진 5. 물류기술·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6.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7.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1. 국내외 식자재물류기술 수준의 조사 2. 식자재물류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기법의 활용 3. 식자재물류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4. 그 밖에 식자재물류기술·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 국내외 물류기술 수준의 조사 2. 물류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기법의 활용 3. 물류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4. 그 밖에 물류기술·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제조업자·물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에 따른 식자재유통 물류 기능 효율화 시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과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사업, 물류센터 지원¹⁶⁾과 중복되는 사안으로 추가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검토의견

식자재 공급체계의 안정성, 신속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자재 유통물류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식자재 유통 물류의 표준화, 정보화, 공동화, 기술 고도화,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1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제1항제1호에 따른 어상자 등 물류 기자재 및 시설의 개발·보급 사업을 명시, 제48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에 따른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그 시설 기준에서 집하·배송시설을 필수시설로 규정하여, 집하·배송기능을 필수 기능으로 확보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의 조문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과 중복되고, 같은 조에 따른 ‘물류’에는 “식자재유통물류”도 포함되는 바, 제정안의 별도 입법실익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체계자구를 통일하기 위하여 제28조 제1항 중 ‘유통기능’을 ‘식자재유통 기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5) 식자재유통공동수배송센터의 지정 등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공동수배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식자재유통공동수배송센터(이하 “공동수배송센터”)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수배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식자재유통공동수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자재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부지 면적, 시설 면적 및 유통시설로의 접근성 등을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식자재유통공동수배송센터(이하 “공동수배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수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수배송센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동수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부지 면적, 시설 면적 및 유통시설로의 접근성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 수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유서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유서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운영하려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에 따른 식자재유통공동수배송센터의 지정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과 중복된다는 의견임.

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센터 지원¹⁷⁾과 중복되는 사안으로 추가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검토의견

제정안은 다품목·소량·고빈도 배송이 특징인 식자재 배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수배송센터를 통해 물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송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이고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국가가 국가가 지역별 공동수배송센터¹⁸⁾를 지정·지원할 수 있

1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에 따른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그 시설 기준에서 집하·배송시설을 필수시설로 규정하여, 집하·배송기능을 필수 기능으로 확보하고 있음

18) 4. “공동수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송·배송 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도록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반 물류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비용절감, 식자재의 품질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규정과 대부분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되, 식자재의 특성상 보관 온도 별 분리 저장 배송설비가 필요하고 다품목·소량·고빈도 배송이라는 특성 등을 반영하려면 일반 배송센터와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 제29조는 제2항에서 공동수배송센터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반면, 유사입법례인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이후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공동집배송센터 지정고시, 공동집배송센터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공동수배송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이 지정 이후의 절차와 관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제29조에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등 신속한 공동집배송센터 설치를 위한 각종 인·허가 규정을 두고 있음.

제정안에 공동수배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전제로 신속한 공동수배송센터 설치를 위한 인·허가의 의제 규정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 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승인·인가·협의·해제·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2.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의 허가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제정안은 공동수배송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수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법 위반행위 등에 관하여 시정하거나 퇴출시킬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유사입법례를 참조하여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 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6) 식자재유통업체 등의 관리현황 점검·감독 등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식자재유통업체 관리자의 업무집행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고요구, 자료제출 요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경우 3일 전까지 일시·목적·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식자재유통업체 등의 관리현황 점검·감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식자재유통업체 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그 일시·목적 및 내용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	제4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그 일시·목적 및 내용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현황, 업무의 집행 및 비용의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관리현황에 점검·감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업체까지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점검·감독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감독 등 규정과 유사하게 식자재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관리현황 점검·감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는 식자재유통업체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행

정적 감독과 점검 수단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따른 식자재운영업체는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업종임.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위해식품에 대하여 긴급대응 하거나(제17조), 사업장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하는 경우 조치(제79조)를 하기 위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제정안과 같이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 하기 위한 조사·검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유통산업발전법」이 해당 조항을 둔 취지는 대규모점포등이 지역 상권, 소비자, 중소유통업체 등에 미치는 높은 영향력을 고려하여, 대규모점포등의 운영과 관리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바,

이를 식자재운영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행정적 부담을 야기하는 반면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44조의2제3항과 같이 증표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를 받는 식자재운영업체의 권리 보호와 조사 과정의 정당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7) 보고, 권한의 위임·위탁, 수수료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식자재유통업체 개설등록·취소 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안 제30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1조),

식자재유통업체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31조(보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제10조·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자재유통업체 개설등록·취소 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통보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2.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취소 및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3. 4.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3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자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시행사 2. · 3. (생략)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33조(수수료) ① 제10조에 따라 식자재유통업체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4에 따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수수료)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자재유통업체 개설등록은 지나친 소상공인 규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개설등록을 전제로 하는 보고 및 수수료 조항에 대하여도 반대한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제정안 제31조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식자재유통업체 개설등록·취소 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식자재유통업체 개설등록·취소 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수행하는 자’를 삭제하고 ‘식자재유통업체 개설등록·취소 현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제31조 조 제목을 ‘통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32조 및 제33조는 사무의 위임·위탁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안이 수용되는 경우 함께 수용되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제정안 제22조(식자재유통 우수 관리의 인증), 제25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및 제26조(우수관리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가 반영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추가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8) 벌칙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제정안 상의 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두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35조)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 제1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자재유통업체를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 - 제25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제49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 제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생략) ③ · ④ (생략)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500만원 이하</u>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식자재유통업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 제22조제5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500만원 이하</u>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 3. (생략) -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 내용에 따라 그 의무에 대한 벌칙을 둘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법률상 의무 이유만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해 벌칙을 두는 것은 단속의 편의만을 위한 벌칙으로 비난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제정안 제34조 및 제35조는 제정안 상의 불법행위 또는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두고 있음.

제정안 (제34조제1호)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자재유통업체를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3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요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폐쇄 등의 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식품위생법」 상 신고의무 이외에 별도의 식자재유통업체를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미등록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게 행정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경우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비추어 형벌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34조제2호)는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벌칙(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 (제35조제2호)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제35조제4호)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되는 제22조제5항에는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제30조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각각 추가함으로써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9) 부칙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고 있음(안 부칙)

제정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제정에 대하여 신중검토 의견이나,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 시행령 마련 등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2) 국민권익위원회

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어 본 제정안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추가하는 취지의 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검토의견

제정안은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에 관한 부칙만을 두고 있음.

그런데 식자재유통업체 개설등록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제정안에 따른 식자재유통업체를 운영하던 기존 사업자의 사업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허가를 받기 전에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인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유사입법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7856호, 2021. 1. 5.)

제2조(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허가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부 칙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제18조(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한편 제정안에 따른 식자재유통업체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할 당시 제한규정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보호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당사자의 신뢰보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경과조치를 통해 신법 시행전의 사유에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

「관세사법」

부 칙 (제15329호, 2017.12.30.)

제3조(관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4호·제5호·제5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현행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도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기본계획 수립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시행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7